



# 2022공학대학 학과 졸업논문 내규

## 목 차

● 건축학전공	3
● 건축공학전공	5
●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7
● 교통·물류공학과	9
● 전자통신공학과	11
● 전자시스템공학과	12
● 전자공학부	14
● 재료공학과	16
● 화학공학과	17
● 재료화학공학과	19
● 기계공학과	21
● 산업경영공학과	22
● 생명나노공학과	24
● 로봇공학과	25
● 융합공학과	26
● 국방정보공학과	27
● 스마트융합공학부	28
● (융합전공)디자인공학전공	30

## 건축학전공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대상)** 졸업논문제는 건축학 전공의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부전공자, 연계전공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건축학전공은 졸업설계작품제를 실시한다.

### 제2조(논문제출 자격)

- ① 졸업논문(작품)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 ② 5학년에 진급하려는 학생은 4학년말에 교과과정 이수표와作品集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 건축학 전공 교수회의에서 진입심사를 받는다. 진입심사에 통과해야만 졸업 설계 과정을 이수 할 수 있다.
- ③ 졸업설계작품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및 졸업전시가 원칙이나 해외교환학생, 장기인턴십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및 졸업전시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졸업전시회만으로 대체하여 인정가능하다.

단, 해외교환학생, 장기인턴십 등의 학생도 예외 없이 무조건 캡스톤 디자인 발표 또는 졸업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품)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졸업논문(작품)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 제4조(졸업설계/전시회 형식)

- ① 건축설계7,8을 졸업 설계 과정으로 한다.
- ② 건축학 전공은 졸업설계 작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졸업 설계 과정을 전시한다. 단, 전시가 졸업필수 조건은 아니며 졸업설계 담당 지도교수회의를 통해 전시회 참여 가능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

### 제5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 ① 졸업설계를 진행 하고자 하는 학생은 '건축설계7'의 수강 신청 전 까지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 ②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2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논문작성)

- ① 5학년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사정을 위한 건축학전공 교수회의 이전까지 사정 자료로서 졸업논문(졸업작품집), 교과과정 이수표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논문심사)

- ① 건축학 전공 교수회의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졸업여부를 심사한다.
- ② 졸업논문 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수료증만 교부한다.

## 부 칙

- (1) (경과조치) 이 세칙 실시 전에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제4학년 2학기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축공학전공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졸업논문제는 다중전공자 및 복수전공자를 포함한 건축공학 전공의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부전공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3조(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4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졸업논문 작성 및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제5조(논문형식)**

- ① 졸업논문은 건축공학캡스톤디자인2의 결과물로 대체한다.
- ② 졸업논문의 형식은 학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개인별 또는 조별로 작성 가능하다.

**제6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학생의 지망에 따라 배정한다.

**제7조(논문심사)**

- ① 졸업논문의 심사는 학과에서 지정한 장소와 날짜에 공개발표형식으로 한다.
- ② 학과 전임교원 중 2인 이상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개별적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통과여부를 판정한다.

**제8조(준용규정)** 논문형식은 건축공학캡스톤디자인2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 교환학생, 장기인턴십, 휴학, 복학 등의 사유로 건축공학캡스톤디자인2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과의 승인을 거쳐 건축공학캡스톤디자

인2 발표에 준하는 대체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9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수료증만 교부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22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 자격)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 ① 졸업논문계획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학과장이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한다.
- ② 졸업논문 작성 및 제출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제4조(논문형식 및 내용)

- ① 졸업논문은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2의 결과물로 대체한다.
- ② 졸업논문의 형식은 학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개인별 또는 조별로 작성 가능하다.

제5조(논문 지도교수) 지도교수는 학과 전임교원으로서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2의 지도교수와 동일하게 배정한다.

제6조(논문심사)

- ① 졸업논문의 심사는 학과장이 지정한 장소와 날짜에 공개발표형식으로 한다.
- ② 학과 전임교원 중 2인 이상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통과여부를 판정한다.

제7조(준용규정)

- ① 논문형식은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2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교환학생, 장기인턴십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2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2 발표에 준하는 대치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② 휴학 및 복학 등으로 교과과정이 변경되어 건설환경캡스톤디자인2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 졸업 시까지 해당 학년에 그러한 과목이 한과목이라도 설강되어 있으면 이를 수강하여야 하며, 이 내규의 적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미통과수료자로 처리된다.

제9조(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 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써 졸업사정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통물류공학과 졸업논문(작품) 내규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졸업 작품 제출 자격) 졸업 작품 제출 자격은 교통물류공학과 주 전공자로 한하며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 (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 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써 졸업사정 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작품계획서 및 학생명단 제출시기)

- 1) 졸업 작품 계획서의 제출 시기는 졸업 작품 제출 자격기준에 타당한 자로서 학과에서 지정한 날짜까지 제출한다.
- 2) 졸업 작품 계획서는 교통캡스톤디자인 담당 조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5조 (작품 제출 시기 및 형식)

- 1) 졸업 작품 제출 시기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교통캡스톤디자인2 최종 발표 학기로 한다.
- 2) 졸업 작품은 1개 조당 작품 보고서 및 포트폴리오를 교통캡스톤디자인 담당 조교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졸업 작품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구성)

- 1) 졸업 작품 대상자는 작품의 주제에 따라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조를 배정하여 작품 진행에 전 과정을 지도받도록 한다.
- 2) 졸업 작품 심사위원회는 교통캡스톤디자인 과목을 담당하는 2인 이상의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구성한다.

제7조 (졸업 작품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자격)

- 1)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내외로 한다.

- 2)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제8조 (졸업 작품 심사 방식 및 기간)

- 1) 졸업 작품의 심사는 학과에서 지정한 날짜에 발표와 졸업 작품 및 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2) 졸업 작품 발표 시기는 공고를 통해 공개되며 제출된 졸업 작품 및 보고서는 교통캡스톤디자인 담당 교수가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제9조 (준용규정) 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학교에서 지원하는 기타 프로그램(해외교환학생, 장기인턴십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캡스톤디자인 발표에 준하는 논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제10조 (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미통과수료자로 처리된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통신공학과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 또는 직전학기로 한다.

제4조(논문형식) 졸업논문을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한다.

제5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논문심사)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교환학생, 장기인턴십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캡스톤디자인 발표에 준하는 대체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8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미통과수료자로 처리된다.

제9조(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 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써 졸업사정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시스템공학과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학칙` 제46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졸업논문제 시행 세칙`에 따라 전자시스템공학과 졸업논문제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 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다중전공자 및 복수전공자를 포함한 전자시스템공학과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논문(작품) 작성 및 제출시기)

1. 졸업논문의 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작성은 별지에 정하여진 양식을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2.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 작성 계획서를 최종학년 학기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캡스톤디자인1`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작품과제 계획서로 졸업논문 계획서를 대체할 수 있다.
3.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다만, `전자정보캡스톤디자인 2`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최종보고서로 졸업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4. 제출된 졸업논문은 구두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5. 현장실습/ 인턴참여 등의 사유로 캡스톤 2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에 한하여, 사전에 지도교수와 상담 한 후에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첨자료 5. 졸업논문 양식-별지 서식)

제4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1. 졸업논문 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졸업논문 작성 전 과정을 지도한다.
2. 졸업논문의 내용에 따라 지도교수가 산업체 멘토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체 멘토와 지도교수가 공동지도할 수 있다.
3. 산업체 멘토에 대한 추천은 매학기 초에 이루어지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산업체 멘토의 활용여부를 확정한다.

제5조(논문 심사)

1. 제출된 논문은 2명 이상 교수들의 심사를 통해 통과여부만을 판정한다.
2. 졸업 논문 심사는 매 학기말에 실시된다.

제6조(기타사항) 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1. (시행일) 본 내규는 2013년 3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붙임 제1호 (캡스톤)>

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작품과제) 계획서			
학과과제 명		분야명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
발 명		구성인원	총 명
구 분	<input type="checkbox"/> 창의성 과제 <input type="checkbox"/> 신학업과 과제 <input type="checkbox"/> 자제대상인용특과 과제		(교수 신명 대학장 신명 기업체 신명)
지도교수	<input type="checkbox"/> 학동 (H/W-S/W) <input type="checkbox"/> 비전공 및 소재 (H/W) <input type="checkbox"/> 소프트웨어(S/W)		
소 속	한양대학교 공학대학 OO학부 OO전공		
지도교수	소속학과	성 명	
	E-mail	영락제(H/F)	
구 분	성 명	영락제(H/F)	E-mail
대표학생			
참여학생			
특수성 및장소	재료/가공비 배정금액 (₩)		(한화)
기입일/인원	(기입일: 대표이사: 성명) (기입일: 동행자: 성명)		
기입일 현황	회사명/주요담당명 (OOOOOOOOOO)		
	특기/일/담당명/담당명		
2016. 9. .			
지도교수 : OO명 OO (인)			
OO명/OO명/OO명 : OO (인)			

※ 직통전화번호로 작성.

<붙임 제2호 (캡스톤) 졸업논문 (캡스톤디자인 작품과제) 최종보고서>

작업제출 일람	
보고서작성자 성명(1)	보고서작성자 성명(2)
지도교수 성명	
Put English Title Here	
Author name, Author name, Advisor name	
Abstract	
Put Abstract(technology, conceptual description, solution) text here. Put Abstract(technology, conceptual description, solution) text here. Put Abstract(technology, conceptual description, solution) text here. Put Abstract(technology, conceptual description, solution) text here. Put Abstract(technology, conceptual description, solution) text here.	
단락을 사용하여 요약	
요약	
요약을 사용하여 요약	
핵심어/키워드 : 핵심어(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영문/대문) 순으로 기입	
1. 과제 필요성	
상위직 중심하게 단계의 재해 미용(영요상)	
2. 과제 해결 방안 및 과정	
장기적 단계의 해를 영아, 직접, 직통의 기술성 기내외동 생명	
2.1. 계획	
목적과 과정 내용을 명확히 하시오	
3. 개념적 및 설계문제(해)	
개념과 설계개념 설명	
4. 개념적 및 구성 설명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시오	
5. 기입제 역할(기)	
6. 총기	
상위직 단계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임, 서로, 사용된 소프트웨어, 사용된 시설 기기 등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간 역할 분담	
성명	역할
	실제도(%)
실고문명	
(1) Put Abstract text here.	
(2) 실고문명 작성 순서:	
실고문명 작성 순서: 실고문명, 총서(기) (총문명) 제목명, 목차(Vol. No)	
부록 (작성 data)	
부록	
(작성 data)	
부록	
(작성 data)	
부록	
(작성 data)	

## 전자공학부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다중전공자 및 복수전공자를 포함한 전자공학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 또는 직전학기로 한다.

제4조(논문형식)

- ① 졸업논문은 캡스톤디자인 최종보고서로, 논문심사는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한다.
- ② 정당한 사유에 의해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수강하지 못하는 졸업 예정자의 경우 따로 형식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 ① 졸업논문(의) 작성은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지도교수는 본교 전자공학부 전임교원이어야 한다.

제6조(논문심사)

- ①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 ② 2명 이상의 본교 전자공학부 전임교원의 심사를 통해 통과 여부를 판정한다.

제7조(준용규정) 논문심사 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교환학생, 학기제 현장실습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부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캡스톤디자인 발표에 준하는 심사로 대처하도록 한다.

제8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 미통과 수료자로 처리된다.

제9조(기타사항) 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학부 교수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료공학과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제4조(논문형식) 졸업논문을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한다.

제5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논문심사)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교환학생, 장기인턴십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캡스톤디자인 발표에 준하는 대체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8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미통과수료자로 처리된다.

제9조(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 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써 졸업사정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화학공학과 졸업논문 내규

###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하여 공학대학 화학공학과 소속 학생들의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 제 3 조

(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 제4조

(논문형식) 졸업논문을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한다.

### 제5조

(논문 지도교수 배정)

- ①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
- ② 캡스톤디자인 발표를 위하여 3학년 1학기 말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두 학기 동안 캡스톤디자인1, 2를 수강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논문심사)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제7조

(준용규정) 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교환학생, 장기인턴십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

겨질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캡스톤디자인 발표에 준하는 논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제8조

(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더라도 논문미통과수료자로 처리된다.

### 제9조

(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 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써 졸업사정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료화학공학과 졸업논문 내규

###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하여 공학대학 재료화학공학과 소속 학생들의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 제 3 조

(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 제4조

(논문형식) 졸업논문을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한다.

### 제5조

(논문 지도교수 배정)

- ①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
- ② 캡스톤디자인 발표를 위하여 3학년 1학기 말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두 학기 동안 캡스톤디자인1, 2를 수강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논문심사)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제7조

(준용규정) 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교환학생, 장기 인턴십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

겨질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캡스톤디자인 발표에 준하는 논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제8조

(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더라도 논문미통과수료자로 처리된다.

### 제9조

(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 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써 졸업사정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기계공학과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본 기계과의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4학년 2학기까지 인정한다. 단 3조의 규정은 학년에 상관없이 2007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까지 적용한다.

**제4조(논문형식)** 졸업논문을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한다.

**제5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논문심사)**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학교에서 지원하는 기타 프로그램(교환학생, 인턴십 등)으로 캡스톤디자인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학과장의 재량에 의해 그에 준하는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특례편입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 미통과 수료자로 처리된다.

**제9조(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 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써 졸업사정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산업경영공학과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 및 지도 요청을 4학년 1학기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허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4학년 1학기에 확인받지 못한 경우, 4학년 2학기 학기시작 후 2주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제4조(논문형식)** 졸업논문을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졸업예정자는 학위 과정 내에 개설되는 캡스톤디자인1,2 수업을 모두 수강하여야 한다. (캡스톤디자인1,2 수업 불이행자는 제7조 준용규정에 따른 세칙을 따른다)

**제5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논문심사)**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교환학생, 장기인턴십, 기타 학생의 주요한 개별 사유 등으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캡스톤디자인 발표에 준하는 대체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8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미통과수료자로 처리된다.

제9조(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 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써 졸업사정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생명나노공학과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제4조(논문형식) 졸업논문을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한다.

제5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논문심사)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교환학생, 장기인턴십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캡스톤디자인 발표에 준하는 대체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8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미통과수료자로 처리된다.

제9조(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 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써 졸업사정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로봇공학과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 자격)** 로봇공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본 로봇공학과와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4학년 2학기까지 인정한다.

**제4조(논문형식)** 졸업논문을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한다.

**제5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논문심사)**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학교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프로그램(교환학생, 인턴십 등)으로 캡스톤디자인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학과장의 재량에 의해 그에 준하는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특례편입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 미통과 수료자로 처리된다.

**제9조(기타전공자에 대한 논문심사)** 기타전공자에 대한 별도의 논문 제출은 없으며, 기타전공자는 주전공의 논문을 통과함으로써 졸업사정상의 논문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융합공학과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졸업논문 응시 자격)** 졸업논문 응시 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졸업논문 형식 및 시기)** 졸업논문은 졸업시험으로 대체한다. 졸업시험 과목은 3-4학년 과목 중에서 정한다.

**제4조(졸업시험 문제 및 심사)** 졸업시험 문제는 학과장이 지정한 3-5과목의 시험으로 하고, 심사는 각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이 말도록 하되, 졸업시험 성적발표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졸업논문은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외 교환학생, 장기해외 인턴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졸업시험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과장이 지정한 졸업시험에 준하는 대체 과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 내규를 통과한 자만이 졸업할 수 있다.

### 부 칙

(시행일) 졸업논문 내규 세칙은 2016년 0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사항) 내규 세칙 제4조에 의해 학과장이 지정한 졸업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 ① 3학년 1과목 : 신호와 시스템(3-2)
- ② 4학년 2과목 : 디지털신호처리(4-1), 통합공학응용(4-2)

2) 2018년 2월 졸업예정자

- ① 3학년 2과목 : 신호와 시스템(3-2), 시스템공학(3-2)
- ② 4학년 2과목 : 디지털신호처리(4-1), 통합공학응용(4-2)

3)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 ① 3학년 2과목 : 전자기파(3-1), 시스템공학(3-2)
- ② 4학년 2과목 : 디지털신호처리(4-1), 통합공학응용(4-2)

## 국방정보공학과 졸업논문 내규

###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하여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소속 학생들의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국방정보공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 제 3 조

(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 제4조

(논문형식) 졸업논문을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

(논문 지도교수 배정)

- ①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5명 이내로 한다.
- ② 캡스톤디자인 발표를 위하여 3학년 2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두 학기 동안 캡스톤디자인1, 2를 수강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논문심사)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제7조

(준용규정) 논문형식은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원칙이나 해외교환학생, 장기인턴십 등의 사유로 정상학기 내에 캡스톤디자인 발표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학과장 및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캡스톤디자인 발표에 준하는 논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스마트융합공학부(조기취업형계약학과) 졸업논문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하여 공학대학 스마트융합공학부(소재부품융합전공, 로봇융합전공, 스마트ICT융합전공, 건축IT융합전공) 소속 학생들의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논문제출 자격)

- ①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스마트융합공학부(소재부품융합전공, 로봇융합전공, 스마트ICT융합전공, 건축IT융합전공)를 주전공으로 하는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 ② 논문작성 및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 지도교수회의를 통해 졸업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졸업시험 과목은 전학년 과목 중에서 정하며 졸업시험 문제는 학과장이 지정한 3-5과목의 시험으로 하고, 심사는 각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이 말도록 하되, 졸업시험 성적발표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 ③ 예외적으로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개강 월 1일 기준 취업 기업이 있는 학생은 논문작성 및 제출, 졸업시험을 면제하며 **최종 졸업사정시까지 취업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 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제4조(논문형식) 졸업논문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정한 주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도교수의 승인 시 졸업설계로 대치 할 수 있다.

### 제5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 ① 교수회는 학생의 지망에 따라 교수회의를 거쳐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논문작성의 전 과정을 지도하도록 한다.
- ②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

## 디자인공학융합전공 졸업논문 내규

### 제6조(논문작성 및 발표)

- ① 논문작성은 학과에서 정한 규격과 양식을 따른다.
- ② 논문 제출 전 구두 발표회를 통한 교수회의 심사를 받아야하며 제안된 개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논문작성을 완료한다.
- ③ 논문은 2부를 출력하여 학과 행정실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논문심사)

- ① 제출된 논문은 2명의 교수회 심사를 거쳐 통과여부가 판정된다.
- ② 졸업논문 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 미통과 수료자로 처리된다.

##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 ① 졸업예정자는 최종학년인 4학년 1,2학기 내에 디자인공학캡스톤디자인 1,2 수업 중 반드시 한 강좌는 수강하여야 논문 작성에 기본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 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제4조(논문형식) 졸업논문은 캡스톤디자인 발표로 대체한다.

이에 제3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졸업예정자는 학위 과정 내에 개설되는 디자인공학캡스톤디자인1,2 수업 중 반드시 한 강좌는 수강하여야 한다.

제5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논문심사) 실기발표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제8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상기에 규정된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최종 졸업사정에서 논문 외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논문미통과수료자로 처리된다.

##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